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4일,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1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3.)

상정, 축조심사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1.)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현행법 제10조제3항에서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표시할 때,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시·청각장애인의 화장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그런데, 화장품 제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이 있는바, 종류가 다양한 모든 화장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점자 등의 표기를 의무화할 경우 화장품 제조업체에 기술적·비용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업체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으나, 전체 화장품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약 94%임을 고려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한 모든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화장품의 약 65%가 동시에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출 제품에 한글점자를 표시할 경우 해외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국제조화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